

## 7. 축산업 허가제는 무엇인가요?

### ▣ 축산업 허가제 도입 개요, 우수 종돈장 지정 배경

- 등록제는 우제류 및 가금류 전 농가 확대적용, 그중 일정규모 이상 농가 축산업 허가제 도입
- 종축업, 부화업, 정액 등 처리업의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'13. 2. 23일부터 도입 (유예기간1년)
  - 가축사육업은 축종별(소, 돼지, 닭, 오리 등) 사육규모에 따라 4단계('13~'16년까지)에 걸쳐 허가제
- 위치·시설·사육두수·교육 기준을 정하여 기준 충족 시 허가를 합니다.

### ▣ 우수 종돈장 평가 대상 및 기준

- 허가제는 '13.2.23일부터 시행하되 허가대상농가는 '14. 2월까지 허가기준 갖추어야 합니다.  
⇒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'13. 2월부터 적용됩니다.

구 분	축종	사육두수	대상면적(m <sup>2</sup> )	'13.2월	'14.2월	'15.2월	'16.2월
1단계	돼지	2,000두이상	1600	허가	허가	허가	허가
2단계	돼지	1,000두이상	800	등록	허가	허가	허가
3단계	돼지	500두이상	400	등록	등록	허가	허가
4단계	돼지	50m <sup>2</sup> 이상	50	등록	등록	등록	허가
소규모 농가	돼지	50m <sup>2</sup> 미만	-	등록	등록	등록	등록

### ▣ 교육기준

- 업종·축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되 종사기간별로 차등 적용
- 연간 의무시간 : 신규진입농가 20시간(3일), 허가대상농가10시간(2일), 등록대상6시간(1일)

### ▣ 위치, 시설, 단위면적당 사육두수

위치기준	시설기준	단위면적당 사육두수
① “가 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” 상 주거밀집지역, 상수원 보호구역 등 타법에 의한 축사설치 제한 규정 적용 ② 도로, 하천, 도축장·사료공장·종축장 등 축산관련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신규설치 제한 (기존 축사는 인정)	① 가축사육업 : 축종별사육규모별로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되, 사육규모가 적어질수록 기준 완화 ② 종축업, 정액등처리업 : 가축사육업 시설기준 + 추가기준	모돈(1.4m <sup>2</sup> ), 비육돈 (0.8m <sup>2</sup> )

(양돈과 / 041-580-3441)